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Ⅱ)

지난 10월호에서는 세법상 중소기업에 대하여 설명했는데, 이번 호에서는 그 뒤를 이어 중소기업에게 주어지는 세제상 지원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1.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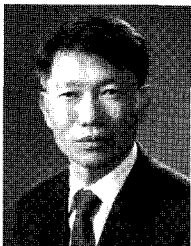
1) 창업중소·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이후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납부할 법인세나 소득세의 5~30%를 감면해준다.

감면대상은 지난 호에 설명한 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감면비율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소기업인지, 중기업인지에 따라서 또는 수도권 안에 위치했는지, 수도권 밖에 위치했는지에 따라서 달리 적용된다.

소기업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주된 사업의 업종별로 제조업은 100명 미만, 광업·건설업·물류산업·여객운송업·축산업은 50명 미만, 기타의 사업은 10명 미만인 경우의 기업을 말하는데,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않



송 재 현 공인회계사/세무사
대현회계법인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및 석사 학위 취득
- 공인회계사, 세무사(1986년 취득)
- 안전회계법인 근무(1984년~1991년)
- 개인사무소 운영(1991년~2000년)
- 화인경영회계법인 송파지점 대표(2000년~2002년)
- 대현회계법인 대표이사(2002년~현재)

는다. 또한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에 있어서는 본점이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라면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있는 것으로 본다.

3)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에 의한 물품대금 결제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면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대상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물건을 구매하고 기업구매전용카드, 판매기업발행 환어음, 판매대금 추심의뢰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 구매론 제도, 네트워크론 제도를 이용하여 구매대금을 결제한 경우가 해당되는데 세액공제액을 <표 1>과 같이 계산한다.

4) 업종전환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이 5년 이상을 계속 영위하던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준다.

감면을 받으려면 수도권과밀억제 외의 지역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의 업종, 즉, 광업, 제조업, 건설업, 물류산업 등의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전환 전의 사업을 양도 또는 폐지하고 양도 또는 폐지한 날로부터 1

년(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전환사업으로 전환, 또는 전환 전의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전환사업으로 추가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및 그 이후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준다.

5) 공장의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및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2011. 12. 31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이후 4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그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2.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

1)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설비·정보보호시스템설비 등을 취득한 경우 당해 설비투자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표 1> 기업구매 전용카드 등에 의한 물품대금 결제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법

①	$\left[\begin{array}{l} 30일내 결제한 \\ \text{기업구매전용카드 등의 사용액} \end{array} - \begin{array}{l} \text{구매대금지급을 위해} \\ \text{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 \end{array} \right] \times 5(4)/1,000$
②	$\left[\begin{array}{l} 60일내 결제한 \\ \text{기업구매전용카드 등의 사용액} \end{array} - \begin{array}{l} \text{구매대금지급을 위해} \\ \text{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 \end{array} \right] \times 15/1,000$ <p style="text-align: center;">(① 차감후의 금액)</p>

※단, 법인세(소득세) 산출세액의 10%를 한도로 한다.

2) 정보화사업지원금에 대한 손금산입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해 받은 출연금 등을 지원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은 사업연도에 당해 금액 전액을 일시손금에 산입하고 과세이연할 수 있다. 지원설비로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기업간 정보공유시스템, 20이상의 단위업무를 통합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등이 있다.

3. 기타 세제상 우대지원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중소기업은 1990. 1. 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종전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도 대체 투자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각종 투자세액의 공제가 가능하다.

2) 최저한세 적용기준에 대한 우대

최저한세란 기업이 세법상 각종 세금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액을 말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11~14%가 적용되는 일반기업에 비하여 3~6% 정도 낮은 8%의 최저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3)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결손금 소급공제란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일반적인 결손금과 달리 직전과세연도에 낸 세금을 소급하여 환급받도록 한 것을 말하는데, 이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 가능하다. 이 경우 중소기업으로서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직전 과세연도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를 한 기업이어야 가능하다.

4) 접대비 한도의 우대

접대비의 경우 세법상 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그 인정한도가 일반기업에 비하여 높다. 일반기업은 기본금액 1,200만원과 수입금액 적용률에 따른 적용금액을 합한 금액인데 비해 중소기업은 기본금액 1,800만원과 수입금액 적용률에 따른 적용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한다.

5) 중소기업 간의 통합 또는 업종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를 유예하고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해준다. 이 경우 소비성서비스업(호텔·여관·주점업 등)을 제외한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어야 하며, 새로이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으로 이전하는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다.

통합하는 시점에 통합 전의 기업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통합법인이 그 자산을 처분할 때 납부토록 하여 통합시점에서는 세금부담이 없다. 또한 통합되는 재산을 취득·등기함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등록세도 면제해준다.

또한 중소기업이 지식정보산업 등으로 업종 전환하기 위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하거나 법인세를 분할과세하도록 한다. 즉,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앞에서 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의 업종으

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은 기계장치 등의 취득분은 양도소득세가 50% 감면, 토지·건물 취득분은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되며, 법인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3년 거치, 3년 분할하여 익금산입할 수 있도록 한다.


6) 중소기업 자원설비에 대한 익금불산입

중소기업이 대기업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설비에 대하여는 그 무상 기증받은 설비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이때 기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은 적용이 제외된다.

또한 저가로 기증받은 설비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

7) 기타 지방세 등에서의 지원

영세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사업소세가 면제된다. 즉,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 및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 사업소세 및 재산할 사업소세가 각각 면제된다.

또한 중소기업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가 면제된다. 

‘전자세금계산서’란 무엇인가요?

국세청에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간(B2B)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한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2010. 1. 1. 이후 공급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가 의무화된다. 개인사업자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아래 각 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교부한다.

- 「조특법」 제5조의 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를 이용하는 방법
-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 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혜택 및 교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는 다음과 같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교부 건당 100원(연간 100만원 한도, 2011.12.31.까지)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 법인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부과된다.
-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달력상의 월을 걸쳐서(예 : 2. 15~3. 14 등)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발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한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발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된다.

■문의 : <http://www.esero.go.kr>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